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3. 6. 14.

사건번호 2013년 형제12421, 36670, 47785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 공소장

검사 진재선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김용관 (580105-████████), 55세

직업 前서울지방경찰청장, 010-████████

주거 서울 성동구 ██████████(옥수동, ██████████  
██████████)

등록기준지 대구 달서구 ██████████

죄명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123조, 제4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법무법인 금성(담당변호사 전우석, 박재영)

## II. 공소사실

### 1.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은 1986. 11.경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1990. 7.경 경찰에 입문하여 서울성동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경무관, 경찰청 보안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충북지방경찰청장을 거친 후, 2011. 11.경 재차 경찰청 보안국장에 보임되어 근무하다가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여 2012. 5.경 부터 2013. 3.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였다.

## 2.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이버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의혹의 확산과 서울수서경찰서의 수사 착수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 12. 11. 민주통합당 당직자의 공직자 선거개입 신고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서울수서경찰서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sup>1)</sup> 소속 직원 김○○의 주거지인 서울 역삼동 ○○ ○○○○ 오피스텔 ○○○호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위 오피스텔에 현존하는 노트북, 휴대폰 등 증거자료의 확보를 주장하는 한편 김○○은 경찰의 요청에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대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치 상황이 진행되던 중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단 조직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문재인 후보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근거로 현장에 민주당이 출동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편 국가정보원은 “김○○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증거 없이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 사적 공간에 무단 진입해 정치적 댓글 운운한 것은 사실 무근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2012. 12. 19.로 예정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

1) 민주통합당 고발장에는 ‘성명불상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이라고 기재하였고, 언론에서 2011. 11.경 기존의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나, 수사한 결과 직제상의 편제 및 규모와는 무관하게 ‘심리전단’으로 통칭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

칭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슈로 떠올랐다.

그 후 약 2일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2012. 12. 13. 14:40경 출입문 개방 시 김○○의 변호인,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서울수서경찰서 경찰관, 기자단 대표가 동시에 입실하여 김○○이 휴대폰은 제출을 거부하되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하기로 하면서 대치 상황이 종료되었다.

한편, 2012. 12. 12.경 위와 같이 대치 상황이 한창 진행되던 중 민주통합당은 김○○과 성명불상의 심리전단장을 상대로 ‘2012년 가을경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의 지시에 따라 김○○ 등 심리정보국 직원 수십 명이 강남 일대 PC방, 커피숍 등지에서 다수의 언론사·정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체계적으로 결과물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수서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수서경찰서장은 민주통합당의 강력한 수사 촉구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려 하였지만 범죄를 입증할 증거인 김○○의 ID 및 필명(닉네임)을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이어 12. 13. 오전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수서경찰서장을 방문하여 민주통합당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수서경찰서장은 “현재 민주통합당이 댓글 내용이나 필명 등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김○○의 컴퓨터가 확보되면 훼손 여부 확인과 복구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당시는 투표일 6일 전의 긴박한 선거정국 하에 있었고, 우선 위 김○○이 국가정보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직원인지, 정치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지 등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진상 확인 결과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위 고발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2012. 12. 13. 오후 김○○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을 임의제출 받아 그 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위 컴퓨터들을 넘겨주고 삭제 파일의 복구,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 저장 정보의 검색 등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 3.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디지털증거분석 경과

서울수서경찰서는 2012. 12. 13.자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김○○ 제출의 개인용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분석 의뢰 대상으로 송부하면서, 위 고발 혐의와 관련하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인 디스크 이미징, 복구된 삭제 파일, 인터넷 히스토리, ID 및 닉네임 자료 등 디스크 전자 정보 및 혐의 구증에 필요한 참고자료 일체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2. 12. 13. 분석 의뢰 대상 컴퓨터 2대를 인수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사이버 요원 인력 지원을 받았으며 12. 14. 오전 국가정보원의 협조로 노트북 컴퓨터의 보안 해제 조치를 실시한 다음 그날 오후부터 이미징 작업에 들어가 하드디스크 복사를 마치고 분석관들을 ① 노트북 담당(노트북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 확인), ② 데스크탑 담당(데스크탑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 확인), ③ 인터넷 검색 및 취합 담당(위 노트북과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접속해서

해당 내용 확인 및 정리)의 3개 조로 편성하여 인케이스<sup>2)</sup>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증거분석 작업에 착수하였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2. 12. 14. 20:00 ~ 21:00경 위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삭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메모장 문서 파일(txt file) 1개를 발견하였는데, 그 메모장 문서 파일에는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 방식, 베스트 게시판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 게시물의 선정을 지원하거나 저지하는 방법<sup>3)</sup>과 함께 3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되어 있고, 이◇◇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뽀뽀>', <보배드림>, <SLR클럽>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과 “이적단체강제해산법 제정이 시급합니다(어제와 다른 오늘, 12. 7. 12, 629)”,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서둘러 주세요(365일 맑음, 12. 6. 29, 570)”이라는 글 등이 들어 있었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즉시 위와 같이 파악된 아이디와 닉네임을 검색어로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여 그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확

---

2) 인케이스(EnCase) 프로그램은 1998년 미국 Guidance Software inc.가 사법 수사기관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한 컴퓨터 증거분석용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 관련 수사에서 디지털증거의 획득과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선 90년대 후반부터 600개의 사법기관에서 컴퓨터증거수사와 관련하여 EnCase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솔루션으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2001년 미석유회사 엔론의 회계부정사건이다.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서 실행할 경우 삭제 파일 복구, 인터넷 접속 기록 히스토리 파악, 최근 3개월간 사용한 문서 파일 및 실행 파일 목록 확인, 키워드를 이용한 저장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하다.

3) 위 메모장 문서 파일에 「 0 추천(누구나 가능) : IP 앞 세자리 보고 중복 체크 0 반대(회원만 가능) : IP 중복 체크도 함 0 베오베 → 밀어내기 밖에 방법이 없음 → 베오베 되기 직전 선동글 무력화(반대3) 0 베스트 → 밀어내기 혹은 추천 1/2에 해당하는 반대표 획득 → 베스트 되기 직전 선동글 무력화(반대3), 0 베스트 퇴출? → 광우 미스터리 바로 퇴출 ... 이유를 모르겠음 ... <영악한 운영실태> 0 운영자 임의 삭제 조치 0 조회수 50 이상 게시물 수정 불가 ...(하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하고 그 과정에서 위 아이디·닉네임과 연계된 아이디·닉네임 10개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하드디스크의 인터넷 접속 기록에서 김○○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에 이례적으로 수만 건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sup>4)</sup>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 검색을 통하여 인터넷 상에서 ‘노트북 MAC 주소 변경 방법<sup>5)</sup>’등을 검색한 사실도 알아내는 한편, 인터넷 검색 결과 위 메모장 파일에 기재된 이적단체강제해산법 및 한일 군사정보협정 관련 글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 때부터 2012. 12. 16. 밤 무렵까지 위 디지털증거분석팀 10명이 철야 근무를 하면서 위 아이디·닉네임 합계 40개를 검색어로 활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들어가 위 아이디·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을 확인하거나<sup>6)</sup> 하드디스크의 인터넷 접속 기록 URL 중 위 아이디가 부기된 URL을 가지고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하는<sup>7)</sup> 등 하드디스크 분석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하여

4) 구체적으로 노트북에 남아있는 인터넷 접속기록상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및 언론사 사이트 접속 회수는 다음과 같다.

todayhumor.co.kr (오늘의 유머) 17,116건, www.bobaedream.co.kr (보배드림) 1,348건, www.ppomppu.co.kr (뽀뽀) 1,076건, www.ilbe.com (일간베스트) 54건, agora.media.daum.net (다음 아고라) 288건, bbs.agora.media.daum.net 1305건, news.chosun.com (조선일보 뉴스) 358건, news.naver.com (네이버 뉴스) 1,368건

5)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란 모든 디바이스들이 통신을 하기 위해 갖게 되는 고유 주소값을 의미하는데, MAC 주소 변경 방법을 검토하였다는 것은 IP 역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의미여서 일반 네티즌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 등 전문가의 업무 수행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6) 분석관들은 ‘오늘의 유머’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위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작성·게시한 글을 확인하였는데 김○○의 ‘오늘의 유머’ 접속 기록이 주)<sup>4)</sup>와 같이 17,116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분석관들이 ‘오늘의 유머’에서 확인한 김○○ 아이디 작성의 정치적인 게시글은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7)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은 인터넷 창 주소로서, 어떤 컴퓨터로 인터넷 글을 열람하거나 작성·수정·삭제한 경우 컴퓨터 하드디스크 인터넷 접속 기록에는 그 작업을 한 인터넷 창 주소가 나타나고 그 뒤에 컴퓨터 사용자의 인터넷 창 로그인 ID가 부기되거나 열람

인터넷 검색 작업을 수행하거나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터넷 검색 작업을 수행하여 김○○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오늘의 유머’ 등 몇 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여야 정당 및 대선 후보에 관한 게시글을 비롯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글을 작성·게시한 사실을 다수 확인하였다.

#### 4. 피고인의 범행 결의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12. 11. 25.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2. 19.까지 전국 경찰에 비상근무령이 발령된 가운데 관내 주요 선거 관련 경비 및 치안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며 비상근무를 하여 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2. 11.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 사건이 관내 수사경찰서에서 발생하였고, 동 사건 수사는 서울수서경찰서가 담당하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이 디지털증거분석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긴박한 선거 정국 하에서 경찰의 진상 확인 결과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수사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즉시 넘겨주어 증거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검색 및 IP 추적 등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였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여론 모두 위

---

(view)·작성(write)·수정(modify)·삭제(delete) 명령어가 부기되기도 한다. 분석관들은 노트북 하드디스크 메모장 문서 파일에서 추출한 아이디 등을 키워드로 하여 하드디스크 인터넷 접속 기록 히스토리 검색을 실시하여 위 아이디가 부기된 URL을 찾아 이 URL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작업을 통해 김○○이 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게시글을 열람·작성·수정·삭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의혹에 관해 신속한 진상 확인을 촉구하고 있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수사결과라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수사경찰서에 증거분석 결과물을 지체 없이 넘겨주고 결과물 취득 경위를 설명해주어 수사경찰서 수사팀이 증거분석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수사 방향을 잡도록 해주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12. 15.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최○○과 수사과장 이○○로부터 “하드디스크 분석 담당 2개 조와 인터넷 검색 및 취합 1개 조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구된 메모장 문서 파일에서 김○○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이 수십 개 나왔고 거기에는 김○○이 주로 들어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 우수 게시물 만드는 방법과 밀어내는 방법 등이 적혀 있으며 ‘오늘의 유머’ 등 정치적 이슈가 논의되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이 수만 건 확인되고 메모장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하드디스크 검색을 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하여 이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을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분석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로부터는 디지털 증거분석팀장 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이○○에게 건네준 수기보고서<sup>8)</sup>를 직접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날의 증거분석 결과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정치관여 내지 선거개입의 증거들이 다수 포착되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러한 분석 결과물을 수사경찰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바로 수사하여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

---

8) 이 수기보고서는 분석 상황에 대한 상부 보고는 컴퓨터 기록이 남지 않도록 펜으로 직접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12. 15. 오전부터 12. 16. 밤까지 분석 상황에 관한 상부 보고는 모두 이와 같은 수기보고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날 것이고, 이러한 수사결과가 외부에 알려질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선거정국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고, 오히려 위 분석결과물을 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제하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당한 시점을 선택하여 수서경찰서에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내용으로 왜곡된 발표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5.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실행

### 가.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를 시킨 직권남용

피고인은 2012. 12. 15. 오전 위와 같이 마음먹은 다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에게 일단 증거분석을 좀 더 진행시키면서 수서경찰서에 분석 결과물을 일체 넘겨주지 말고 분석 결과를 알려주지도 말라고 지시하면서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부장 최○○, 수사과장 이○○, 수사2계장 김○○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와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을 모두 은폐하고 하드디스크에 김○○ 본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게재한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의 전자기적 잔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에 착안하여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를 수십 개의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나 2012. 10. 1. 이후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 일단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디지털포렌식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김○○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사이버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일응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디지털증거분석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있는 가운데,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은 이와 같은 수사 결과 발표 방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고 구체적인 발표 문안과 언론 대응 자료 등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분석 상황과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절대 알려주지 말고 보안을 철저히 지킬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한편 수사과장과 수사2계장은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장○○과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 김△△ 등에게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수서경찰서에 보내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sup>9)</sup> 초안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정해 놓은 발표 내용 방침에 맞춰 작성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 오전 서울수서경찰서장 이◇◇에게 전화로 ‘곧 디지털증거분석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이◇◇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아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회신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디지털증거분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작성하여 보도자료 초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2. 16. 저녁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내

---

9)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주체가 외형상 수서경찰서로 되어 있어 발표 문안에는 수서경찰서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분석 결과 회신을 받아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분석 결과물을 일체 넘겨주지 않지만 최소한 분석관 작성 명의의 분석결과 보고서는 발표 전에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물을 넘겨주지 말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감안하면 이러한 증거분석결과 보고서는 실제 분석 결과와 다른 내용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사부장 최○○, 수사과장 이○○, 수사2계장 김○○, 사이버수사대장 장○○ 등과 함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 같은 날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날인 12. 17. 아침 9시에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서울수서경찰서장 이광석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위와 같이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전자 발송하고, 수서경찰서로부터 보도자료 초안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등은 그 초안의 1면 상단에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결과”라고 제목을 달고 그 아래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 -”이라고 발표 요지를 적은 후 수사착수 경위와 진행사항 항목 다음에 “□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sup>10)</sup>”라는 항목을 만들어, “2012. 12. 13. 피고발인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한 후 금일 22:30경 분석 결과를 회신 받았으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2012. 10. 1 ~ 12. 13 간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넣어 보도자료를 완성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완성된 보도자료와 함께 수서경찰서 송부용으로 보도자료 내용에 맞추어 작성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승인한 후 수서경찰서에 이를 즉시 송부하라고

---

10) 사실은 하드디스크 분석만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까지 해놓고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라고만 기재한 것이다.

지시하였다.

서울수서경찰서장 이◇◇은 12. 16. 22:30 ~ 23:00경 경찰청 인트라넷으로 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와 위 보도자료를 차례로 수신한 다음 12. 16. 23:00경 경찰 수사 공보 관행에 따라 위 보도자료를 수서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날인 12. 17. 09:00경 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와 위 보도자료 내용과 같은 취지의 언론 브리핑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수서경찰서가 보도자료 수신에 조금 앞서 전자 수신한 '하드디스크 키워드 검색과 인터넷 접속 기록에서 혐의사실 관련 내용 발견치 못하였고 삭제된 문서파일을 복구하였으나 혐의사실 관련 내용을 발견치 못하였다'는 내용의 디지털증거분석관 10명 명의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수십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하여 몇 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수만 번 접속하여 정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메모장 문서 파일의 존재, 40개 아이디·닉네임의 발견 경위, 인터넷 접속 기록과 인터넷 검색 실시 사실 등을 은폐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한 것일 뿐 아니라 수서경찰서가 증거분석 결과물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허위 내용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만 받아 본 상태에서 마치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분석 결과를 제대로 회신받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결국 그 내용과 경위 모두 실체를 은폐한 허위 발표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서경찰서 서장 이◇◇과 수사과장 권○○ 등 수사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나. 수사 방해 직권남용

2012. 12. 17. 수서경찰서장의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후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향후 계획으로 밝힌 바와 같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하여 이제 40개의 닉네임·아이디 내역과 함께 일체의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수차 요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서경찰서에 분석 결과를 알려주지도 분석 결과물을 보내주지도 말라는 피고인의 엄명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분석 결과물 회신 요청을 계속 거부하였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선거일 이전에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다른 수사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하였다.

유선으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의 송부를 요청하던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전체의 회신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발견된 닉네임과 아이디 내역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2. 12. 18. 오전 ‘디지털증거분석물 반환요청’ 공문을 송부하여 정식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분석 결과물 회신을 요청하였는데, 공문에 결과물 일체의 신속한 회신 요청을 기재하면서 ‘분석결과 보고서상 확인된 아이디 및 닉네임 목록은 지체 없이 통보바람’이라고 적시하여 분석 결과물 전체의 신속한 회신이 어렵다면 아이디와 닉네임만이라도 먼저 보내달라는 요청을 명확히 하였다.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정식 공문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분석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항의하였고, 12. 18. 19:30

경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마지못해 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인된 인터넷 접속 기록과 최근 3개월간 사용한 파일 내역 등 분석 결과물 일부를 별도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 서울지방경찰청에 찾아 온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교부하였으나, 정작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본격적인 수사 진행에 필요한 위 아이디와 닉네임 40개 목록과 이를 포함한 총 44개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물은 넘겨주지 아니하였다.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수서경찰서로 돌아 간 수사팀은 아이디와 닉네임 목록 등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결국 서울지방경찰청은 2012. 12. 18. 늦은 밤 아이디와 닉네임 목록을 수서경찰서에 전자 송부하였고,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 00:38경 다시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온 수서경찰서 수사팀에게 아이디와 닉네임 40개 목록 및 44개 키워드로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를 검색한 결과물을 별도의 CD에 담아 넘겨주었다.<sup>11)</sup>

결국 피고인은 증거분석 결과물의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 7. 결어

---

11)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검색어로 활용하여 직접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고 위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작성한 게시글과 클릭 내역을 파악하였음에도 이러한 인터넷 검색 결과물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일체 넘겨주지 않았고 중간수사 발표 시 언론 일문일답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검색을 통한 게시글 확인을 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2012. 12. 19. 아이디와 닉네임 내역을 회신받은 수서경찰서는 12. 14. ~ 12. 18. 사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삭제한 게시글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인터넷 검색을 실시한 결과물을 수사관서에 넘겨주지 않은 것도 결국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방해가 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서울수서경찰서에 대한 정당한 지도·감독권의 행사인 것처럼 그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수서경찰서 서장 이◇◇과 수사과장 권○○, 지능범죄수사팀장 김☆☆,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유○○ 등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로 하여금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서울수서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함과 아울러 언론 배포 및 브리핑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까지 서울수서경찰서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회신 요구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위 이◇◇과 권○○ 등 동 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sup>12)</sup>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 이◇◇과 권○○ 등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서울수서경찰서 홈페이지 등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 운동을 하였다.

---

12) 2012. 12. 19.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40개의 구체적인 아이디와 닉네임 정보를 인계받은 당일 웹 검색과 가입자 조회 등으로 하루 만에 김○○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다수 확보한 점에 비추어 신속히 증거물을 인계하였거나 아이디와 닉네임 정보를 제때 알려주었다라면 선거일 이전에 상당한 수사 진행이 가능하였다.

### Ⅲ. 첨부

#### 1. 변호인선임서 1부

검사

(인)